

의안번호	2208795
의 퇴 인	박정하의원
회 답 일	2025. 4. 9.
추계번호	25C1186

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5,000만원(연평균 9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90	—	—	—	—	90	18
실태조사(안 제7조)	180	—	—	180	—	360	72
합 계	270	—	—	180	—	450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전담기관 지정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3	안 제7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8조(창작 및 제작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업자와 채널콘텐츠실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창업 등의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0조(교육훈련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업자 및 채널콘텐츠실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해외진출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업자 및 채널콘텐츠실연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행사 참가, 영상콘텐츠 현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2조(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술역량강화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술융합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6조(전담기관 지정 등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3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	
4	안 제8조(창작 및 제작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5	안 제9조(창업 등의 지원)	×	- 현 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6	안 제10조(교육훈련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7	안 제11조(해외진출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8	안 제12조(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술역량강화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5년)
안 제6조(전담기관 지정 등) 안 제8조(창작 및 제작 지원)	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(37.95억원)
안 제10조(교육훈련 지원)	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(6.7억원)
안 제11조(해외진출 지원)	신규 유망매체(FAST 등) 현지화 지원 및 비즈매칭 지원(15억원)
안 제12조(뉴미디어영상콘텐츠 기술역량강화)	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운영지원(21억원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한편 제정안은 창업 등의 지원(안 제9조)을 규정하고 있고,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비용추계 대상에서는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

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
소요 발생 예상
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약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방송법」 제92조에 따른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('23~'27) 수립비로 2022년 8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('24~'28)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을 편성하였음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7조)

-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첫 실태조사는 제정안 시행 첫 해에 실시하고,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비 등으로 3년마다 1억 8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OTT 사업체 및 이용행태 조사,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를 위해 각각 1억 8,000만

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.

[표 4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실태조사(안 제7조)	180	-	-	180	-	3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